

[사 건 명] 행심 2019 - 76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위(교감, 교사, 학부모위원 등)를 공개』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4. 29.(1차 심의), 2019. 5. 10.(최종심의)에 개최된 피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한다)와 관련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서 2019. 5. 10. 학폭위 최종심의 전 학폭위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9. 5. 2. 피청구인에게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 위촉’ 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2019.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5. 14.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어 2019. 5. 1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9. 4. 29. 1차 학폭위에서 기피 신청에 필요한 학폭위 위원에 어떠한 정보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학폭위가 그대로 진행되었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학폭위 위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와 같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들이 아닌 경력, 소속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폭위 위원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는 일부 공개만을 요청한 정보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항, 마항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학폭위 위원이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알고 싶고, 지난 2019. 4. 29. 학폭위 시 청구인이 위원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제공받으면 된다.

- 마.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름을 가린 채 공개하는 것은 대다수 민감한 개인 정보 공개 시 사용되는 방식이다.
- 바. 현재 수많은 다른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학폭위 위원회 구성 명단을 이름 한두 글자만 가린 채 공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은 무리한 것이 아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자치위원회 위원회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위원이 회의에 참가하였을 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위원이 회의를 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여부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이다.
- 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일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할 수 있다.
- 다. 위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학부모 위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격이 부여된 자들이고 그 외 전문 위원들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전문가로서 위촉된 자들이어서 청구인이 청구하는 나이, 직

업, 경력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각 위원별 나이, 직업, 경력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련법규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학교폭력예방법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정보 공개 청구한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마항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학폭위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학폭위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위와 같은 학폭위 구성 및 위촉 절차에 비추어보면 학폭위 위원은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다.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명단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학폭위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폭위 위원명단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

구체적인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각 위원별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한 없이 전부 공개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항에 따라 그 중 ‘개인의 성명·직업’ 정도가 공개되어야 한다.

참고로 공개 결정하는 ‘직업’이라 함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에서 위원 자격(교감, 교사,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을 의미하고, 학부모위원의 경우 위원 자격이 학부모위원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직업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항에 따라 학폭위 위원의 각 성명, 직업(교감, 교사,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은

공개함이 타당하다.

V. 결 론

피청구인이 201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학폭위 위원회 성명 및 직위(교감, 교사, 학부모대표 등)를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